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1 기준경비

① 행사 차출 지급경비 신설

- 행사 차출시 경비지급 근거로 기준경비 신설하여 반일(4시간) 근무시 6만원 지급, 4시간 초과시 일 상한액 범위(12만원) 내 근무시간 비례 지급 규정
- ※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반영

현 행	개 정				
<p>「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p> <p>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p> <p><신설></p>	<p>「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p> <p>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u>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1과 같다.</u></p> <p>○ <u>[별표 7-1]</u> <u>행사 차출 지급경비</u></p> <p>① <u>경비성격 : 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 하는 행사·축제를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 (행사 차출 경비)</u></p> <p>② <u>기준액 : 반일(4시간 이하) 근무시 6만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u></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반일 기준(4시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4시간 초과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u></td> </tr> </tbody> </table> <p>※ 시간외 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및 대체 휴무 부여(8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와 병행 불가</p> <p>※ 국가 정책적 사무를 위해 지방공무원이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 적용</p> <p>③ <u>지급경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편성</u></p>	반일 기준(4시간)	4시간 초과시	6만원	<u>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u>
반일 기준(4시간)	4시간 초과시				
6만원	<u>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u>				

②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기준 명확화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중 무보직 4급의 지급기준에 대한 지자체별 적용이 달라 혼선 발생, 국가예산 지침을 준용하여 기준 명확화

현 행	개 정
<p>[별표2] 업무추진비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p> <p>주)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월 50만원,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을 편성 가능</p> <p><신설></p>	<p>[별표2] 업무추진비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p> <p>주)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월 50만원,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을 편성 가능</p> <p><u>주)5) 4급 이상이 과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 편성 가능</u></p>

③ 특정업무경비 공통필수항목 개편

- 지자체가 공통·일률적으로 운영중인 주요 선택항목(예산·세무)을 실정에 맞게 제도상 공통필수항목으로 직접 규정
- 지방재정업무 유사분야에 근무하는 예산담당공무원과의 형평성 고려,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월 15만원으로 인상

현 행	개 정																		
<p>[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② 지급대상 <신설></p> <p>③ 기준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대 상</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월 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공통필수항목</td> <td>대 민 활동비 (생략) <신설> ▶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 (생략) <신설></td>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50,000 (생략) <신설></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월 액	공통필수항목	대 민 활동비 (생략) <신설> ▶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 (생략) <신설>	50,000 (생략) <신설>	<p>[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② 지급대상 <u>※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 총액에서 세무·예산활동비 제외하고 산정</u></p> <p>③ 기준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대 상</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월 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공통필수항목</td> <td>대 민 활동비 (생략) ▶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 (생략)</td>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50,000 (생략)</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td> <td><u>세무 활동비</u> ▶ 시도(과장 이하), 시군구(과장 이하) 및 읍면동(담당 이하) 세무담당공무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u>150,000</u></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td> <td><u>예산 활동비</u> ▶ 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 (과장 이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u>150,000</u></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월 액	공통필수항목	대 민 활동비 (생략) ▶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 (생략)	50,000 (생략)		<u>세무 활동비</u> ▶ 시도(과장 이하), 시군구(과장 이하) 및 읍면동(담당 이하) 세무담당공무원	<u>150,000</u>		<u>예산 활동비</u> ▶ 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 (과장 이하)	<u>150,000</u>
구분	대 상	월 액																	
공통필수항목	대 민 활동비 (생략) <신설> ▶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 (생략) <신설>	50,000 (생략) <신설>																	
구분	대 상	월 액																	
공통필수항목	대 민 활동비 (생략) ▶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 (생략)	50,000 (생략)																	
	<u>세무 활동비</u> ▶ 시도(과장 이하), 시군구(과장 이하) 및 읍면동(담당 이하) 세무담당공무원	<u>150,000</u>																	
	<u>예산 활동비</u> ▶ 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 (과장 이하)	<u>150,000</u>																	

④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용어 구체화 및 제외 대상사업 추가

- 보조금 총액한도 내 전체예산 증가율 산정 시 적용하는 '편성년도'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에 혼동 방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액한도제 대상에서 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p>[별표3] 지방보조금</p> <p>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p> <p>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전환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p>[별표3] 지방보조금</p> <p>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p> <p>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u>전년도</u>와 <u>전전년도</u>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전환사업) <u>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u>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개정

-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기준 변경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p>[별표3] 지방보조금</p> <p>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 폐지·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한 보조사업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여, 부처에서 제출한 2024년 예산 요구안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함('23.6~7월)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별 상대평가 실시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예정 <p>○ 보조사업 성과평가(매년) 및 유지 필요성 평가(3년마다) 결과가 미흡(60점 미만)한 경우 예산 삭감 등 조치</p>	<p>[별표3] 지방보조금</p> <p>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 폐지·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한 보조사업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여, 부처에서 제출한 2024년 예산 요구안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함('23.6~7월)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평가 세부기준 개선 및 사업별 상대평가 실시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u>개정('23.12월)</u> <p>○ 보조사업 성과평가(매년) 및 유지 필요성 평가(3년마다) 결과가 <u>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사업 폐지 등 조치</u></p>

현 행	개 정
<p>※ (성과평가 미흡 사업) 결과 정도에 따라 지방보조금 최대 50% 삭감 (유지 필요성 평가 미흡 사업)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감 또는 폐지</p> <p>□ 신규사업 자체진단 실시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강화</p> <p>○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평가기준(별표5)에 따라 사업계획 미흡 또는 사업성과 부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편성 제외</p> <p>※ (기준 예시) 사업계획 9점 미만(총 15점) 또는 사업성과 36점 미만(총 60점)인 경우</p>	<p>※ <u>(성과평가 미흡 사업) 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또는 지방보조금 지원 중단</u> <u>(유지 필요성 평가 미흡 사업)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인 경우 사업을 폐지. 다만, 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유지 가능</u></p> <p>□ 신규사업 자체진단 실시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강화</p> <p>○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u>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별표6)</u>에 따라 사업 계획 미흡 또는 사업성과 부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편성 제외</p> <p>※ (기준 예시) <u>사업계획 12점 미만(총 20점) 또는 사업성과 24점 미만(총 40점)인 경우</u></p>

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및 편성방법 변경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
 -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축하 복지포인트는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
- ※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반영

현 행	개 정
<p>[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p> <p>② 기 준 액 : 2024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3년 기준액(140만원) × (1 + 2024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p> <p>③ 편성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치단체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3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 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p>[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p> <p>② 기 준 액 : <u>2025년</u>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u>2024년</u> 기준액(<u>143만원</u>) × (1 + <u>2025년도</u> 공무원보수인상률)</p> <p>③ 편성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치단체 '<u>24년</u>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u>24년</u>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 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u>출산축하 포인트는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u>

7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관(240) 신설

- '지난연도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리되어 현연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출납이 완료된 연도의 수입이 혼재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아져 지난연도 수입항을 별도 관으로 신설

현 행				개 정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2	자치단체간 부담금			222	자치단체간 부담금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4	기타수입			224	기타수입
		225	지난연도 수입			225	지난연도 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240	지난연도 수입
						241	지난연도 수입
						241-01	지난연도 수입

8 차량관련 과태료 목 설명 명확화

- 차량관련 과태료(234-01)목에 대한 설명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명확화하여 합리적으로 과태료 분류 가능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장	관	항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234	과태료			234	과태료
		234-01	차량관련 과태료			234-01	차량관련 과태료
			1.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				1.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징수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
		234-02	기타 과태료			234-02	기타 과태료
			1. 기타 과태료 수입				1. 기타 과태료 수입

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세분화

- 기능별 분류 취지에 적합하도록 사회복지(080) 분야 내 보육·가족 및 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부문을 세분화하여 운영

현행				개정			
[별표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 13개 분야 52개 부문				[별표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 13개 분야 54개 부문			
분야	부문	명칭		분야	부문	명칭	
080		사회복지(8)		080		사회복지(10)	
	081	기초생활보장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6	노동	
	085	노인·청소년			087	보훈	
	086	노동			088	주택	
	087	보훈			089	사회복지 일반	
	088	주택			08A	보육	
	089	사회복지 일반			08B	가족·여성	
					08C	노인	
					08D	청소년	
-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분야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예시	분야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예시
080	사회복지			080	사회복지		
	084 보육·가족 및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 지원 등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 지원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모·부자 복지 등 	보육·가족지원, 여성복지증진		08A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육 관련 업무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지원
	085 노인·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 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시설 용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노인복지증진, 청소년보호및육성		08B 가족·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관련 업무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여성단체 지원 등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모·부자 복지 등 	여성·가족복지증진
					08C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 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노인복지증진
					08D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시설 용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청소년보호및육성

10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의 통계목 변경

- 정원채정 및 인사운영 등이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를 '기타직 보수 통계목(101-02)'에서 '보수 통계목(101-01)'으로 이동

현 행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100 인건비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보수	101 인건비	01. 보수
	1. 기본급 1)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공무원 봉급		1. 기본급 1)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공무원 봉급
	02. 기타직 보수		02. 기타직 보수
	1.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단서 신설>		1.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11 청원경찰 피복비 편성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청원경찰 상시 착용 제복 편성 근거 반영

현 행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관리비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3. (생략) 4. 피복비 가.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1~3. (생략) 4. 피복비 가. 공무원 청원경찰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12 감정평가 비용 관련 편성 근거 마련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24.1.30.)에 따라 취득세 신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 비용의 편성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사. (생략) 아. 기타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감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 시험 등의 시험료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사. (생략) 아. 기타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감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취득세 시가인정액 관련 감정평가 비용 ,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13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 지출 근거 마련

- 지역보건법 개정(23.6.13.)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가 설립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 지출을 위한 편성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201 일반 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바. (생략)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7) (생략) <신설>	201 일반 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바. (생략)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7) (생략) 8) 「지역보건법」 제18조의 2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

14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통계목 설정 변경

- 「자율방범대법」 및 동법 시행령 신설(23.4.27.)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 지급을 위한 근거를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통계목에 구체화

현 행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1 일반 보전금	06. 자율방법대 실비지원 1.~2. (생략) 3.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운용비	301 일반 보전금	06. 자율방법대 실비지원 1.~2. (생략) 3.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

15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비 편성 통계목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년)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비 편성 시 시설비에 근거 마련하여 통계목 편성 혼란 방지

현 행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4. 시설비 가~카. (생략) <신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4. 시설비 가~카. (생략) 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비

16 예비비 과다편성 방지

-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과다편성 지양 권고

현 행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예비비 (각 회계별 예산총액 대비 1% 범위 내 편성 필요)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 에 따른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비비 (각 회계별로 예산총액 대비 1% 범위 내 에서 편성,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 도는 없음)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도 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 지양 회계운용 상 여유재원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

17 예산서 첨부서류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3.9.26.)에 따른 예산안 첨부서류 반영

현 행	개 정
<p>[별표 12] 예산의 편제</p> <p>2. 예산의 편제</p> <p>제2권 첨부서류</p> <p>1~15. (생략)</p> <p><신설></p> <p>16~17. (생략)</p> <p><신설></p> <p>18~19. (생략)</p> <p>2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p>	<p>[별표 12] 예산의 편제</p> <p>2. 예산의 편제</p> <p>제2권 첨부서류</p> <p>1~15. (생략)</p> <p><u>16.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u></p> <p>17~18. (생략)</p> <p><u>19.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u></p> <p><u>20.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u></p> <p><u>21.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u></p> <p>22~23. (생략)</p> <p><u>2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u></p>

18 특별회계 정비 권고 명시

- 운영 필요성이 적거나, 연례적으로 이·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특별회계는 통·폐합하도록 유도

현 행	개 정
<p>[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p> <p>1. 예산편성</p> <p><input type="checkbox"/>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생략)</p> <p>- 특별회계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p> <p><신 설></p>	<p>[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p> <p>1. 예산편성</p> <p><input type="checkbox"/>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생략)</p> <p>○ 특별회계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p> <p>- <u>세입재원과 세출사업 간 연계성이 적거나, 연례적으로 이·불용이 과다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와 통·폐합</u></p>

19 시설비 사업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제시

-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설비 예산은 설계·보상·공사 절차의 진행가능성에 따라 편성하되, 소규모 및 보조사업은 예외로 규정

현 행	개 정
<p>[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p> <p>1. 예산편성</p> <p><input type="checkbox"/>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편성 (생략)</p> <p><신 설></p>	<p>[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p> <p>1. 예산편성</p> <p><input type="checkbox"/>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편성 (생략)</p> <p><input type="checkbox"/> <u>시설비 사업 관련 예산편성사항</u></p> <p>○ <u>시설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보상, 공사의 절차를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함</u></p> <p>○ <u>소규모사업이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u></p>

20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이월 확정 조치

- 이월액 확정시 집행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속비사업은 집행상황 및 이월액을 고려하여 연간부담액 변경 등의 조치할 것을 명문화

현 행	개 정
<p>[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p> <p>4. 예산의 이월</p> <p><input type="checkbox"/> 이월예산의 운영</p> <p><신 설></p>	<p>[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p> <p>4. 예산의 이월</p> <p><input type="checkbox"/> 이월예산의 운영</p> <p>○ <u>이월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할 수 없고, 예산의 이전용도 불가능하므로 예산부서는 이월액 확정시 향후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판단</u></p> <p>○ <u>계속비사업은 예산 집행상황과 이월예산액을 고려하여 연간부담액 변경 등 검토</u></p>

21 수입의 확정 전 집행 허용 개정사항 반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24.6.1.)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를 수입 확정 전 집행 예외로 추가 반영

현 행	개 정
<p>V. 예산편성 참고자료</p> <p>2 예산운용 실무</p> <p>④ 예산 집행</p> <p>바. 배정예산의 집행제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p> <p>○ 세출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p>V. 예산편성 참고자료</p> <p>2 예산운용 실무</p> <p>④ 예산 집행</p> <p>바. 배정예산의 집행제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p> <p>○ 세출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u>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p><u>가. 비상재해복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나. 이자부담 절감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는 경우</u></p>

22 예산편성 참고자료 현행화, 용어 정리 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업무 편의를 위한 예산편성 참고자료 내 주요 법정경비 및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등을 법령에 맞게 현행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 사무관리비 내 ‘급량비’→‘급식비’로 변경 등 용어 현행화 및 개선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개정사항

23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작성양식 개선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중 기타사업에 대한 작성 기준 명확화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중 성과목표 작성양식 내 문구 보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도 동일 내용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Ⅲ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2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③ 대상사업 선정기준		Ⅲ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2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③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사업	비고	대상사업	비고													
자치체가 별도로 추진 하는 사업	· 기타 사업: 이전 성별영향평가 사업, 양평, 성별, 특화 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자치체가 별도로 추진 하는 사업	·기타 사업 ① <u>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u> ② <u>기타 자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u>													
2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 성과목표		2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table border="1"> <tr> <th>전전년도 실적</th> <th>전년도 추정치</th> <th>금년도 목표치</th> </tr> <tr> <td></td> <td></td> <td></td> </tr> </table>	전전년도 실적	전년도 추정치	금년도 목표치				<table border="1"> <tr> <th>성과목표 (성과지표)</th> <th>전전년도 실적</th> <th>전년도 추정치</th> <th>금년도 목표치</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성과목표 (성과지표)	전전년도 실적	전년도 추정치	금년도 목표치				
전전년도 실적	전년도 추정치	금년도 목표치														
성과목표 (성과지표)	전전년도 실적	전년도 추정치	금년도 목표치													
※ 성과목표 작성란에는 성과지표와 단위를 기입		※ 성과목표 작성란에는 <u>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측정수치(단위)</u> 를 기입														

5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24 기금 설치 원칙 명시 및 기금 정비 권고

- 기금은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유사·중복적인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

현 행	개 정
<p><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 <p>② 기본 원칙</p> <p>< 신 설 ></p> <p>가. 사업예산제도 체계와 일치</p> <p>나.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p> <p>다. (이하 생략)</p>	<p><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 <p>② 기본 원칙</p> <p><u>가. 기금설치시 원칙</u></p> <p>○ <u>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적 사항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 운영</u></p> <p>○ <u>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거나 성과 미흡 유사·중복적인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관리 철저</u></p> <p>나. (기존의 가)</p> <p>다. (기존의 나, 이하 생략)</p>

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규정 명확화

-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지방보조금법 등을 준용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능에 대한 문구 명시 및 단서 추가로 혼란 방지

현 행	개 정
<p>[참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제도 개요</p> <p>4. 기금의 관리·운용</p> <p>□ 기금의 집행</p> <p>○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관리 철저</p> <p>-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 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p> <p>- 단, 위원회 심의기능은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수행함</p> <p><신설></p>	<p>[참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제도 개요</p> <p>4. 기금의 관리·운용</p> <p><u>□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u></p> <p>○ <u>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 철저</u></p> <p>-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p> <p>- 단, 위원회 심의기능은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수행함</p> <p>- <u>기금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참조)</u></p> <p>※ 다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능 외 기금고유 위원회 심의기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함</p>